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·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재요청

1. 아동복지법 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 · 확인) 관련입니다.

2. '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· 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**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점검하신 후 **점검 계획서에 첨부된 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2020. 1. 10.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4 제3항에 따라 점검 · 결과 취합 후 온라인 공개 예정(결과 취합일로부터 2개월이내)

○ **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4호**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(청소년 수련시설, 청소년 이용시설 포함)에 대한 **취업제한 점검 의무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과**되어 있으므로 필히 청소년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자체 협의를 통하여 취업제한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취업제한 점검 기간 : '19. 1. 1.~'19. 12. 31**

※ 공문 시행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를 상기 기간 내 점검한 경우 旣 점검 결과를 보고 가능(단,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,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 점검하였더라도 추가 점검후 보고 必)

○ **점검 결과 보고기간 : '20. 1. 1.~'20. 1.10.**

○ **점검 결과 양식 : 붙임 파일 p.8 참조**

붙임 2019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여성가족부장관(청소년활동진흥과장), 여성가족부장관(청소년활동안전과장)

주무관	**변광용**	행정사무관	**여정현**	아동학대대응과장	전결 2019.9.4. **김우기**
협조자					

시행 아동학대대응과-3062 접수 청소년활동안전과-2654 (2019. 9. 5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아동학대대응과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3388 팩스번호 044-202-3968 / bkyzzz1@korea.kr / 비공개(5)